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12
----------	-------

발의연월일 : 2026. 9. 2.

발 의 자 : 박용갑 · 이연희 · 박정현
어기구 · 서영석 · 조인철
허영 · 윤준병 · 김남근
강준현 · 김영환 · 김준혁
이재관 · 이건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연간 채용규모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의무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등이 채용 공고 시 직렬을 세분화하거나, 채용 시기의 연도를 불필요하게 나누어 채용 공고를 하는 방식 등으로 채용규모를 5명 이하로 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채용규모를 사유로 채용의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전공공기

관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제6항 후단 신설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시 채용 시기 및 직렬의 조정 등 채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라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이 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생략)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등의 장은 연간 채용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시 채용 시기 및 직렬의 조정 등 채용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⑥ ----- ----- ----- ---. 이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라 채용의무를 면제받은 내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⑥ (생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